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 다목, 제86조제7항 및 제87조제5항에 따라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사전 계약하여 발송인을 방문·접수하는 소포 우편물(우체국 계약택배)의 우편요금 추가감액 및 이용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 계약택배 요금 추가감액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사항

1. 감액요건

가. 이용계약관서

- 1)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우편집중국
- 2) 6급 이하 우체국(별정국 포함) 중 계약택배 접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을 구비하고 총괄우체국장이 승인하는 우체국

나. 기본 감액대상 우편물

- 1) 월평균 50통 이상 발송하는 택배우편물
- 2) 연합체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500통 이상 또는 계약자(계약업체)별 월평균 50통 이상 발송하는 택배우편물

- 3) 다수지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500통 이상이고 발송지별 월평균 50통 이상 발송하는 택배우편물
- 4) 명절, 농산물 수확기 등 특정기간(6개월 이내) 중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택배우편물
- 5) 한시적(10일 이내 : 영업일 기준)으로 500통 이상 발송하는 택배우편물

다. 추가 감액대상 우편물

- 1) 우체국택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
- 2) 계약자(계약업체)가 우편관서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 3) 우편관서의 물류창고에 입점한 고객이 발송하는 경우
- 4) 신규고객이 월 5,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 5) 1년 이상 장기이용 고객이 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2. 감액범위

가. 기본 감액

- 1) 중량 2kg, 크기(가로+세로+높이) 60cm까지 우체국택배(방문접수, 동일지역 요금기준) 요금의 48% 미만
- 2) 중량 5kg, 크기(가로+세로+높이) 80cm까지 우체국택배(방문접수, 동일지역 요금기준) 요금의 54% 미만
- 3) 중량 1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20cm까지 우체국택배(방문접수, 동일지역 요금기준) 요금의 52% 미만
- 4) 중량 2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40cm까지 우체국택배(방문접수, 동일지역 요금기준) 요금의 33% 미만

5) 중량 3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60cm까지 우체국택배(방문 접수, 동일지역 요금기준) 요금의 18% 미만

나. 추가 감액

다음 추가감액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감액

<계약요금 추가감액 기준>

구 분	추 가 감 액 요 건	감액 요금	비고
1. 우편물 소통 협조 고객	가. 우체국택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	200원 이하	다목과 나목은 중복 불가
	나. 계약자(계약업체)가 우편관서까지 물품 운송	100원 이하	
	다. 우편관서의 물류창고에 입점(월 3,000통 이상 발송)	100원 이하	
2. 신규이용 고객	최초 계약기간(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 3개월)만 적용	50원 이하	제3호와 제2호는 중복 불가
	·요금산정기간 중 월평균 5,000통 이상 발송	100원 이하	
	·요금산정기간 중 월평균 10,000통 이상 발송	200원 이하	
	·요금산정기간 중 월평균 30,000통 이상 발송 (단, 계약우편관서 변경도 포함하되 중도에 계약해지 후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장기이용 고객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적용		
	·요금산정기간 중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	100원 이하	
	·요금산정기간 중 월평균 10,000통 이상 발송	150원 이하	
	·요금산정기간 중 월평균 30,000통 이상 발송	200원 이하	

※ 추가감액 한도액 : 400원

※ 추가감액 요건이 발송물량과 관련된 경우 계약물량에 미달 시 추가 감액 불가

2. (기존 계약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택배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1-17호는 폐지한다.